

검 토 보 고 서

□ 검토경위

1998년 2월 12일 제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의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됨.

□ 사전검토근거

○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

-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보고 (안전심사 절차)-

□ 검토결과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의운영조례안

가. 안전요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5 규정에 의거 '96년 3월 1일 제정한 「파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가 '96년 7월 1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제24조의8에 근거하여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의운영조례」로 대체하려는 것으로서,

기존의 조례가 단순히 굴착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을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음에 비해 금번 입안된 조례에서는 도로굴착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사업과 관련된 교통 소통대책, 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등을 폭넓게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회 규모도 기존 10인 이내로 위축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위촉대상도 도로굴착과 관련된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유관기관외에도 관련 법인·단체와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인까지 포함을 시키므로써 빈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 예방과 도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보다 근접된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내용임.

나. 검토의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될 뿐 아니라 시공과정에서 교통장애를 유발시키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건 조례의 조속한 시행은 물론, 운영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망됨.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심의분야별 안전처리에 있어 신속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12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을 요하는 심의 안전이 접수되었을 때에도 결국 30명의 위원을 모두 소집해야 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고,